

본 약관은 2025년 1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3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 약관은 본 약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담보용자 약관

제정 2003. 06. 03
개정 2003. 09. 15
개정 2004. 11. 05
개정 2006. 05. 10
개정 2007. 05. 10
개정 2009. 02. 04
개정 2009. 02. 23
개정 2013. 03. 22
개정 2014. 01. 24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7. 24
개정 2017. 11. 03
개정 2018. 02. 02
개정 2018. 04. 30
개정 2018. 06. 22
개정 2018. 10. 12
개정 2019. 12. 13
개정 2021. 01. 29
개정 2021. 02. 19
개정 2021. 04. 02
개정 2021. 10. 15
개정 2023. 03. 07
개정 2024. 04. 05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증권담보용자(이하 '대출'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회사와 고객은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대출의 정의)

이 약관에서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대출: 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2. 매도담보대출: 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문이 체결된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제4조(대출약정)

-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대출약정은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대출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 변경한다.
- ③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별도의 대출약정 재체결 없이도 대출한도 내에서는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④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미상환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제5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을 따른다.

제6조(대출방법)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방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출실행 시 대출금을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의 상환)

- ① 일반담보대출금 및 그 대출이자는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증권을 매도하고 그 매도 결제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할 수 있다.
- ② 매도담보대출금 및 그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제9조(담보의 제공)

- ①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는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주식등인 상장주권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무보호등록 중인 증권
 5. 그 밖에 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별첨>에서 정한 증권
- ③ 회사는 제1항의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의 사정가격은 당일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와 같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과 같다.

제9조의2(질권의 설정)

- ① 회사는 대출시 고객이 제공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 ②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별도의 약정 없이 대출약정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시기는 대출금 입금 시로 한다.
- ④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9조의3(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고객은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대출금 및 대출 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다른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추가담보의 제공)

-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추가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한(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③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임의상환정리)

- ① 회사는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1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시 제10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2조 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담보처분대금이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및 채무원금에 미달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미수채권 상환시까지 고객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의 금전에 대하여 미수채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출금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⑧ 고객은 제7항에 따른 주식의 처분 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처분제한 착수가 있는 때.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4조(금지사항)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증권담보용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대출한도 초과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중단 또는 재개할 수 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어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관계법규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유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출한도	고객별 : 10 억원(개인, 법인) 종목별 : 담보주식은 전일종가의 70% [A 군 10 억원, B 군 5 억원, C 군 2 억원] 1 회 최저대출한도 : 종목별 10 만원 (1 만원 단위로 대출)
대출기간	90 일(대출약정은 해지전까지 유효) 만기연장 : 90 일 단위 2 회 가능

2. 제 7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A 군	B 군	C 군	연체이자
연 7.65%	연 8.65%	연 9.25%	연 9.7%

※ 증권담보대출 이자율은 당사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대출기준금리 : 직전 3 개월 평균 CD 수익률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 금리 등을 반영

※ 상세사항은 www.kiwoom.com > 이용가이드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증권담보대출 > 대출금리 참고

(2) 매도대금담보대출 : 연 9.5%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3. 제 7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대출이자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

4. 제 7 조제 2 항 및 제 16 조 2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및 매도대금담보대출 연체이자 : 연 9.7% (연체료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종목)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종목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 연체이자 : 연체금 X 연체료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 일 적용)

5.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담보비율 : 140% (키움형, 기본형)

6. 제 9 조제 2 항제 5 호의 “〈별첨〉에서 정한” 증권은 다음과 같다.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홈페이지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증권담보대출 > 증권담보가능종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담보유지 비율 : 140% (키움형, 기본형)

8.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 기한 및 제 1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별첨〉에서 정한” 납입기일은 다음과 같다.

- 키움형 : 최초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이내
- 기본형 : 최초 요구일 포함 3 영업일 이내

9. 제 12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키움금융센터 수수료에 준함(수수료 : www.kiwoom.com) 고객센터 서비스 > 이용가이드 > 수수료/증거금 > 주식)

10. 제 12 조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1〉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 전액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산정

-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황에 사용하는 방법

$$\text{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 X)}$$

* X=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 주식처분수량은 〈참고〉의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도가격 = (기준가의 -15% 가격) - 거래제비용

▶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증권담보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담보유지비율 140%

※ 거래 제비용(수수료, 제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D-1 일 종가	10,000 원	10,000,000 원	142%	
D일 종가	8,000원	8,000,000원	114%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6,800원	6,800,000원	97%	추가담보 미납 (300만원 담보부족)
D+2일	임의처분 수량을 '기준가의 -15%'인 5,780원으로 산정. 1,000주 모두 임의처분 (5,800원에 매매체결)			

☞ 임의처분 금액(580만원)이 예탁증권담보대출금(7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120만원 입금 필요.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첫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로 하고 가계산)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1)에서 계산 수량의 절반을 적용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주를 가계산해서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50주를 대입하고, 50주도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25주를 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낸다.)

(3) 만약 (1)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과 (2)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을 산정한다.

〈예시 2〉 만기 미상환 시

$$\text{만기미상환 반대매매 수량} = \frac{\text{미상환용자금액}}{\text{매도가격}}$$

* 매도가격 = (기준가의 -15% 가격) - 거래제비용

▶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증권담보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 거래 제비용(수수료, 제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1) 만기일: 담보평가금의 -15% 가격 > 증권담보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4,000 원	14,000,000 원	200%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D+1 일	'기준가의 -15% 가격'인 11,900 원으로 산정,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상환을 위해 589 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결제일에 남은 질권수량은 현금잔고로 전환처리			

(2) 만기일: 담보평가금의 -15% 가격 < 증권담보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7,000 원	7,000,000 원	100%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D+1 일	'기준가의 -15%가격'인 5,950 원으로 산정,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상환을 위해 1,000 주 모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 하한가로 반대매매 주문처리되며, 결제일에 부족금액 발생 시 추가 입금 필요			

11. 제 12 조제 7 항의 “〈별첨〉에서 정한”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해야하는 증권의 순서

ㄱ. 상환가능금액에 대해 자동 현금상환 > 이후 부족금액에 대해 신용 및 담보주식 임의상환(반대매매)

(2) 담보부족 시 반대매매 순서 (자동현금상환 순서 동일)

ㄱ. 신용구분 (유통용자 > 자기용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 증권담보잔고)

ㄴ. 대출일 빠른 순

ㄷ. 종목번호 빠른 순

(3) 만기미상환의 경우 상환가능금액에 대해 자동 현금상환 후 당해 종목 임의상환(반대매매)

12. 제 12 조제 8 항의 “〈별첨〉에서 정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 종목의 교체를 임의상환(반대매매) 당일 08 시 50 분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증권담보용자 약관

제정 2003. 06. 03
개정 2003. 09. 15
개정 2004. 11. 05
개정 2006. 05. 10
개정 2007. 05. 10
개정 2009. 02. 04
개정 2009. 02. 23
개정 2013. 03. 22
개정 2014. 01. 24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7. 24
개정 2017. 11. 03
개정 2018. 02. 02
개정 2018. 04. 30
개정 2018. 06. 22
개정 2018. 10. 12
개정 2019. 12. 13
개정 2021. 01. 29
개정 2021. 02. 19
개정 2021. 04. 02
개정 2021. 10. 15
개정 2023. 03. 07
개정 2024. 04. 05
개정 2025. 01. 23
개정 2025. 01. 31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증권담보용자(이하 '대출'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회사와 고객은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대출의 정의)

이 약관에서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대출: 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2. 매도담보대출: 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문이 체결된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제4조(대출약정)

-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대출약정은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대출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 변경한다.
- ③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별도의 대출약정 재체결 없이도 대출한도 내에서는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④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미상환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제5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을 따른다.

제6조(대출방법)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방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출실행 시 대출금을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의 상환)

- ① 일반담보대출금 및 그 대출이자는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증권을 매도하고 그 매도 결제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할 수 있다.
- ② 매도담보대출금 및 그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제9조(담보의 제공)

- ①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는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따른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주식등인 상장주권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무보호등록 중인 증권
 5. 그 밖에 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별첨>에서 정한 증권
- ③ 회사는 제1항의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의 사정가격은 당일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와 같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과 같다.

제9조의2(질권의 설정)

- ① 회사는 대출시 고객이 제공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 ②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별도의 약정 없이 대출약정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시기는 대출금 입금 시로 한다.
- ④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9조의3(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고객은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대출금 및 대출 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다른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추가담보의 제공)

-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추가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한(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③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임의상환정리)

- ① 회사는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1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시 제10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의상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는 제12조 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담보처분대금이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및 채무원금에 미달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미수채권 상환시까지 고객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의 금전에 대하여 미수채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출금 제한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⑧ 고객은 제7항에 따른 주식의 처분 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한의 이익 상실)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처분제한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4조(금지사항)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증권담보유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대출한도 초과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중단 또는 재개할 수 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어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관계법규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유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대출한도	당사 홈페이지(www.kiwoom.com)의 고객서비스 > 이용가이드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증권담보대출에서 고객별 대출한도 및 종목별 대출한도 확인 가능
대출기간	90 일(대출약정은 해지전까지 유효) 만기연장 : 90 일 단위 2 회 가능

(2) 매도대금담보대출

대출한도	당사 홈페이지(www.kiwoom.com)의 고객서비스 > 이용가이드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매도대금담보대출에서 계좌별 대출한도 확인 가능
대출기간	매도체결 후 대출 신청일 ~ 수도결제일

2. 제 7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당사 홈페이지(www.kiwoom.com)의
고객서비스 > 이용가이드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증권담보대출 > 대출금리 참고

(2) 매도대금담보대출

당사 홈페이지(www.kiwoom.com)의
고객서비스 > 이용가이드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매도대금담보대출 참고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3. 제 7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대출이자 는 매월 첫 영업일에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

4. 제 7 조제 2 항 및 제 16 조 2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및 매도대금담보대출 연체이자 : 연 9.7% (연체료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종목)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종목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 연체이자 : 연체금 X 연체료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 일 적용)

5.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담보비율 : 140% (키움형, 기본형)

6. 제 9 조제 2 항제 5 호의 “〈별첨〉에서 정한” 증권은 다음과 같다.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홈페이지 > banking/업무 > 신용/대출 > 증권담보대출 > 증권담보가능종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담보유지 비율 : 140% (키움형, 기본형)

8.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 기한 및 제 1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별첨〉에서 정한” 납입기일은 다음과 같다.

➤ 키움형 : 최초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이내

➤ 기본형 : 최초 요구일 포함 3 영업일 이내

9. 제 12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키움금융센터 수수료에 준함(수수료 : www.kiwoom.com) > 고객센터 서비스 > 이용가이드 > 수수료/증거금 > 주식)

10. 제 12 조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1〉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 전액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산정

-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

$$\text{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 X)}$$

* X=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 주식처분수량은 〈참고〉의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도가격 = (기준가의 -15% 가격) - 거래제비용

▶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증권담보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담보유지비율 140%

※ 거래 제비용(수수료, 제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 고
D-1 일 종가	10,000 원	10,000,000 원	142%	
D일 종가	8,000원	8,000,000원	114%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6,800원	6,800,000원	97%	추가담보 미납 (300만원 담보부족)
D+2일	임의처분 수량을 ‘기준가의 -15%’인 5,780원으로 산정. 1,000주 모두 임의처분 (5,800원에 매매체결)			

☞ 임의처분 금액(580만원)이 예탁증권담보대출금(7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120만원 입금 필요.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첫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로 하고 가계산)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1)에서 계산 수량의 절반을 적용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 주를 가계산해서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50 주를 대입하고, 50 주도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 25 주를 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낸다.)

(3) 만약 (1)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과 (2)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을 산정한다.

〈예시 2〉 만기 미상환 시

$$\text{만기미상환 반대매매 수량} = \frac{\text{미상환용자금액}}{\text{매도가격}}$$

* 매도가격 = (기준가의 -15% 가격) - 거래제비용

▶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증권담보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 거래 제비용(수수료, 제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1) 만기일: 담보평가금의 -15% 가격 > 증권담보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4,000 원	14,000,000 원	200%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D+1 일	'기준가의 -15% 가격'인 11,900 원으로 산정,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상환을 위해 589 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결제일에 남은 질권수량은 현금잔고로 전환처리			

(2) 만기일: 담보평가금의 -15% 가격 < 증권담보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7,000 원	7,000,000 원	100%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D+1 일	'기준가의 -15%가격'인 5,950 원으로 산정, 증권담보대출금 700 만원 상환을 위해 1,000 주 모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 하한가로 반대매매 주문처리되며, 결제일에 부족금액 발생 시 추가 입금 필요			

11. 제 12 조제 7 항의 “〈별첨〉에서 정한”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해야하는 증권의 순서

ㄱ. 상환가능금액에 대해 자동 현금상환 > 이후 부족금액에 대해 신용 및 담보주식 임의상환(반대매매)

(2) 담보부족 시 반대매매 순서 (자동현금상환 순서 동일)

ㄱ. 신용구분 (유통용자 > 자기용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 증권담보잔고)

ㄴ. 대출일 빠른 순

ㄷ. 종목번호 빠른 순

(3) 만기미상환의 경우 상환가능금액에 대해 자동 현금상환 후 당해 종목 임의상환(반대매매)

12. 제 12 조제 8 항의 “〈별첨〉에서 정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 종목의 교체를 임의상환(반대매매) 당일 08 시 50 분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03. 06. 03 제정〉 이 약관은 2003 년 06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09. 15 개정〉 이 약관은 2003 년 09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11. 05 개정〉 이 약관은 2004 년 11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 05. 10 개정〉 이 약관은 2006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05. 10 개정〉 이 약관은 2007 년 0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 02. 04 개정〉 이 약관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 02. 23 개정〉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03. 22 개정〉 이 약관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01. 24 개정〉 이 약관은 2014 년 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02. 28 개정〉 이 약관은 2014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07. 24 개정〉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11. 03 개정〉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02. 02 개정〉 이 약관은 2018 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04. 30 개정〉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06. 22 개정〉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10. 12 개정〉 이 약관은 2018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 12. 13 개정〉 이 약관은 2019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01. 29 개정〉 이 약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02. 19 개정〉 이 약관은 2021 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04. 02 개정〉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10. 15 개정〉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3. 03. 07 개정〉 이 약관은 2023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04. 05 개정〉 이 약관은 2024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5. 01. 23 개정〉 이 약관은 2025 년 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1.31 개정〉 이 약관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